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5.

국토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6년 3월 20일, 복기왕의원 등 15인

나. 회부일자 : 2026년 3월 23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026.4.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
론, 소위원회부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2026.4.22.) 상정, 축조심사

제3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2026.4.28.) 상정, 축조심사

제4차 국토교통위원회(2026.4.30.) 상정,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
(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국회의원 복기왕)

과거 전체 부지 반환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용산기지 임시 개방은 법적 근거 미비를 비롯해, 해당 부지의 환경 오염 정화 및 위해성 저감 조치가 미흡하여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과거와 차별화되고 책임 있는 접근을 통해 용산공원이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고 국민의 공간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재정비할 필요가 시급함.

이에 용산공원지구 전체가 아닌 일부 반환 부지부터 단계적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일부 반환 부지에 대한 조성계획 수립을 허용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이 용산공원의 조성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안 제14조제1항 및 제3항제1호).

특히 반환부지의 유지·관리 및 운영 과정에서 환경 관리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이를 법적 의무로 명시하여 과거의 환경 부실 문제를 극복하고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

나아가 용산 미군기지 주변 산재부지를 활용하는 캠프 킴 등 복합시설조성지구에서는 획일적인 공원·녹지 기준 대신 유연한 설계 기준을 적용하여 과거와 같은 단순한 외형적 개방 대신 도심 내 양질의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림으로써, 청년층 및 국민의 주거 안정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박현준)

가. 용산공원의 단계적 조성 근거 마련(안 제14조제1항 단서 신설 및 제3항제1호)

개정안은 용산공원의 조성 절차를 변경하여 이른바 용산공원의 단계적 조성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용산부지의 반환이 지연 및 장기화되면서, 용산부지 완전 반환을 토대로 전체 본체부지에 대해 일괄적·총체적인 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용산공원조성계획이 현재까지 수립되지 못하고 공원 정식 조성도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

한편, 각종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정책에 따라 여건 변화가 일어나는 부지 특성상, 용산공원 계획 초기부터 탄력적으로 대응 가능한 단계별 공원 조성계획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나,

현행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기본계획에 기초하여 완결적인 용산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본체부지 일부에 대하여 부분적인 용산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어, 용산공원의 원활한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이에 개정안은 용산부지 완전 반환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일부 반환 부지부터 단계적·부분적으로 공원 조성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민족성·역사성 및 문화성을 갖춘 국민의 여가휴식 공간 및 자연생태 공간 등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이 다양한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게 하려는 이 법의 기본이념을 고려할 때, 국민이 용산공원의 조성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기반을 신속히 마련하려는 취지라는 점에서 타당한 조치로 보임.

나. 반환부지의 환경관리 강화 및 유지·관리·운영기준의 하위 법령 위임 근거 마련(안 제20조의2제1항·제2항)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하여 용산공원의 체계적인 조성을 위하여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2조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에 반환 예정이거나 반환이 완료된 용산부지(이하 “반환부지”라 함)를 효율적으로 유지·관리 및 운영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반환부지에 대한 유지·관리·운영 기준으로 ‘안전’을 명시하고, 관리 범위에 ‘환경관리’가 포함된다는 것을 명시함과 아울러,

반환부지의 유지·관리 및 운영기준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에의 위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재 반환부지 중 ‘장교숙소 5단지’와 ‘용산어린이정원’ 등이 일반에 개방되어 있으며,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반환부지 개방 전 단계에서는 환경안전성 강화 조치를 실시하고, 개방 후에는 지속적인 토양·공기질 모니터링 등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 중임.

다만, 기 개방된 부지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제기된 바가 있고, 추

가적인 부지 개방에 대비하여 토양오염정화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국민적 신뢰 확보가 필요한바,

개정안은 종전의 유지·관리·운영의 기준인 효율성에 더하여 환경관리를 포함한 ‘안전’한 유지·관리·운영을 국토교통부장관의 법적 의무로 명시함으로써, 반환부지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국가가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이라는 점에서 타당한 조치로 보이고,

반환부지의 안전한 관리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 등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 시정요구사항에도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임.

다. 복합시설조성지구에 대한 공원·녹지 확보 기준 완화

(안 제25조의2 신설)

개정안은 복합시설조성지구의 조성사업시행자에게 복합시설조성지구 조성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에 대하여 완화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려는 것임.

용산공원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된 때에는 복합시설조성지구 조성사업시행자는 종합기본계획에 기초하여 복합시설조성지구 조성계획(이하 “복합시설조성계획”이라 함)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복합시설조성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는 때에

는 「도시개발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이하 “도시개발계획”이라 함)이 수립된 것으로 간주되는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이라 함) 제14조제2항 및 그 하위 법령에 따라 1만㎡ 이상의 개발을 수반하는 복합시설조성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최소 ‘상주인구 1인당 3㎡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에 해당하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복합시설조성계획에 포함하여야 함.

현행법에서 주변산재부지의 개발방식으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방식을 취한 것은 사업추진절차를 보다 용이하게 하고 개발수익을 담보할 수 있는 사업구조를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현행 규정에 따르면 주변산재부지에 대한 복합시설지구 조성사업의 경우 구체적인 주택 공급 규모와 관계 없이 획일적인 공원·녹지 확보 기준이 적용되어,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에 비하여 엄격한 규제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복합시설조성지구 조성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원녹지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공원·녹지 확보에 대하여 완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은 도심 내 주택건설용지의 부족 문제를 해소할 필요성과 용산부지가 가지고 있는 지리적 이점 등을 고려하여, 용산부지 중 주변산재부지에 대해 유연한 개발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합리화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한편, 개정안은 완화된 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

주체를 “복합시설조성지구 조성사업시행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복합시설조성계획이 준용하는 도시개발계획의 「도시개발법」을 비롯하여 다수의 개발 법령은 완화된 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 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정권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타 법령과 통일적으로 용산공원정비구역의 지정권자이자 복합시설조성계획의 승인권자인 국토교통부장관을 공원·녹지 확보에 대하여 완화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 주체로 규정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용산공원의 역사성 및 환경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주변산재부지의 녹지율 완화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토양오염 현황 등에 대한 확인 필요

6. 찬반토론 요지

녹지율 완화 및 토양오염에 관한 우려에 대해 면밀한 검토 필요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

-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반영함.